자동차 구입·관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확인하고, 중고자동차의 경우 사고이력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자동차 구입부담을 줄여보세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폐차·도난 및 판매 시에는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관리 1
1. 나만의 차 갖기 4
1.1. 자동차 구입하기 4
1.1.1.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4
1.1.2.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11
1.1.3.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20
1.2. 자동차 등록하기 27
1.2.1.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27
1.2.2. 신규검사를 받아야 해요. 32
1.2.3.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35
1.2.4.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9
2. 자동차 유지하기 43
2.1. 변경사항의 신고 43
2.1.1.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43
2.1.2. 자동차를 개조했어요. 46
2.1.3.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51
2.2. 자동차 검사받기 54
2.2.1.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54
2.2.2.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60
2.3. 고장난 자동차 정비받기 67
2.3.1. 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67
3. 자동차 처분하기 70
3.1.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70
3.1.1.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70
3.2.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72
3.2.1.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72
3.2.2. 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74
3.3.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78
3.3.1.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9

1. 나만의 차 갖기

1.1. 자동차 구입하기

1.1.1.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의 연비(연료 소모 효율) 표시방법이 개선되어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등으로 표시되며, 측정 방법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참고).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하세요.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차 구입계약

자동차(신차) 매매 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 자동차(신차) 매매 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기재됩니다(「자동차(신차)매매약관」).

> ※ **계약서 기재사항 예시**
>
> - 필수기재사항
>
> · 계약의 당사자의 성명주소
>
> √ 매도인(영업담당자를 포함 함)
>
> √ 매수인
>
> · 자동차의 종류색상선택사양·차대번호, 모델연도 및 형식
>
> · 자동차의 인도(인수)시기·장소, 운송비
>
> · 계약금, 대금액, 각종 세금 그 밖의 부대비용 및 그 지급방법시기
>
> · 담보제공별 종류와 비용
>
> · 당사자의 특약사항 : 당사자간의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 약정 등
>
> · 청약일시 및 장소, 계약일시 및 장소
>
> · 계약해제 및 철회권 행사의 요건효과방법
>
> · 자동차의 수리보증·반품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 · 소비자 피해보상자동차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 - 할부계약 체결시 추가 기재사항
>
> ·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의 성명주소

- 현금가격(할부원금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 · 할부유형 및 할부가격(총액)
  -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지급시기
  -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 소유권 유보사항
  -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 시 주의사항

▪ 자동차매매계약은 보통 높은 가격 때문에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계약내용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위 3, 4, 6 및 7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할부거래계약의 해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제7조제1항).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사용에 의해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로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한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자동차 계약관련 분쟁해결기준

▪ 구입한 자동차가 주행능력이나 안전성, 혹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자동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 ⑤ 자동차(2-1)].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 자동차자기인증 등록을 한 사람(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함)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인 자동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해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나. 가.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함)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함)는 가.의 경우에는 1회, 나.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

※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하며, 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결함

-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 및 자동차 결함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kotsa.or.kr), 자동차 품질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통합 포털(https://www.ciss.go.kr), 그 밖의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계약

중고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 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 자동차매매업자는 위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매물을 검색하여 차량상태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요령 및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365 홈페이지(http://www.car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팔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1호).

※ 이를 위반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4호).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는 현재의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자동차의 등록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 등을 볼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을)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8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

▪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통상적으로 '대포차'라 합니다.

▪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대포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의2),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지방세법」 제13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주행거리계 확인

▪ 자동차 주행거리계는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6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의 유형에 따른 해결권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2.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 ⑬ 중고자동차매매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2)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8) 주행거리조작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2.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 ⑬ 중고자동차매매업).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2.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 ⑬ 중고자동차매매업).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 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2.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 ⑬ 중고자동차매매업).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2.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 ⑬ 중고자동차매매업).

계약해제 및 환불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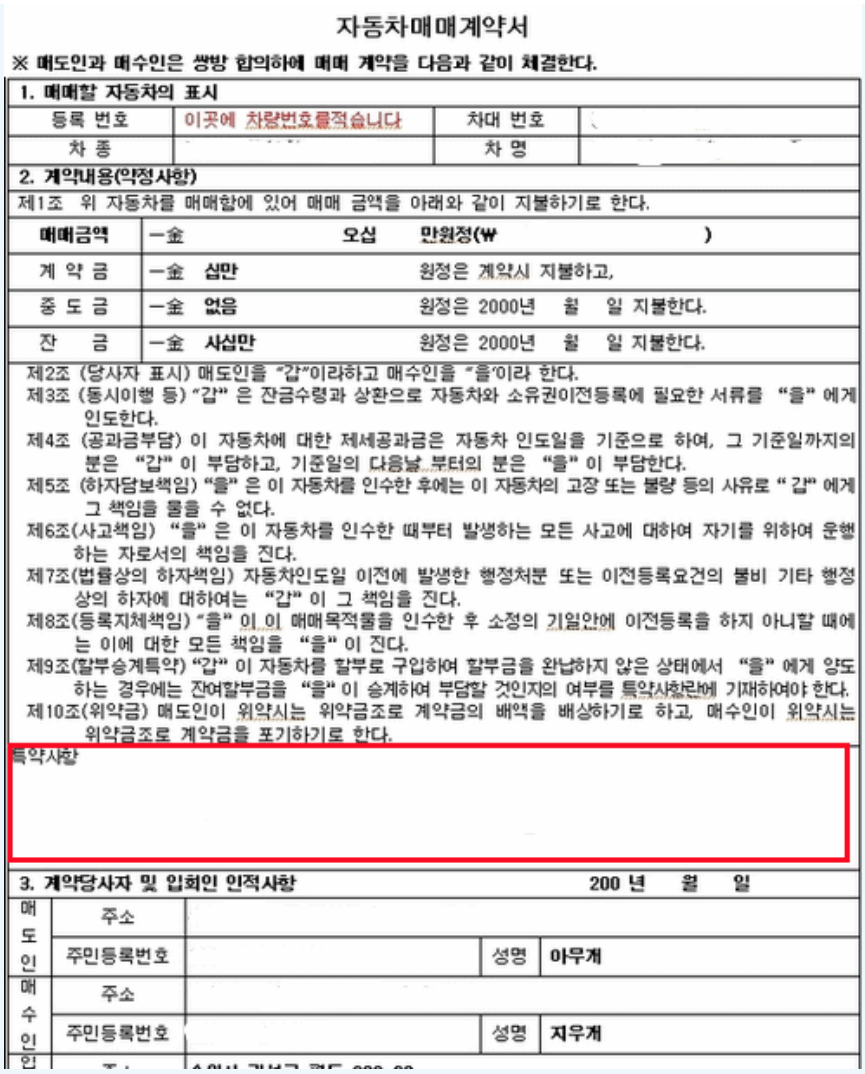
▪ 자동차 매수인은 위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3항).

▪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본문).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 단서).

※ **계약서의 "특약사항" 활용**

·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이곳에 차량번호를적습니다	차대 번호	
차 종		차 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오십 만원정(₩)	
계 약 금	一金 십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 도 금	一金 없음	원정은 2000년 월 일 지불한다.
잔 금	一金 사십만	원정은 2000년 월 일 지불한다.

제2조 (당사자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3조 (동시이행 등) "갑" 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 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 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 부터의 분은 "을" 이 부담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 "을" 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 갑"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사고책임) "을" 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7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 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등록지체책임) "을" 이 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 이 진다.
제9조(할부승계특약) "갑" 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을" 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금)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3. 계약당사자 및 입회인 인적사항				200 년 월 일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아무개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우개

※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서비스(www.carhistory.or.kr)를 이용해 보세요.

·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자료 등을 근거로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유료서비스).

· 그러나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단순 참고용도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1.1.2.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重油)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함] 중 프로판 및 부탄,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 등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제7항 본문 참조).

▹ 5%의 세율(「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3.5%의 탄력세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단서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참조).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초소형 경형 자동차"와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일반형 경형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본문).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 3. 1. 및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 세금을 알아볼까요?

· 배기량 2,000시시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①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②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0만원 부과됩니다.

·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0만원이 되고 여기에 ③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3만원이 됩니다.

·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0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를 사는데 국공채 매입을 꼭 해야 하나요?

· 자동차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1호).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함), ②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③ 소형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 및 ④ 소형특수자동차(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14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 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다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250만원(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2항).

1.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3항).

▪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따라서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leq n \leq 12$)

※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기산일´이라 함)에 따라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납기와 징수방법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참고).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예시>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금(소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자동차 차령별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전단).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n-2)
>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 n: 차령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후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
> ·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
> ①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 ②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 ※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단서).
>
>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
>
>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불포함)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다자녀 양육자´라 함)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아래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제3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위 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함)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 이하 "장애인"이라 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위 1.에서 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 "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본문).

-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단서).

※ 그 밖에 장애인 세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생활안정』의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세금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자동차보험의 개념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2 참조).

자동차보험의 종류

▪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라 함)].

▹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 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및 할인할증적용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 홈페이지(kpub.knia.or.kr)의 <자동차보험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가입의무 면제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서류제출 명령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제외),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제84조제3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를 위반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표와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 및

별표 6).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 다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제3항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참조).

-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반영되어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자동차사고의 상황별 과실비율 결정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accident.knia.or.kr) 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함)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그 10일 되는 날의 다음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726조의4제2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제2항).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1항 본문).

▪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혐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4항 본문).

▪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4항 단서).

1.2. 자동차 등록하기

1.2.1.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함)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가 25㎞/h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신청절차 및 방법

신규자동차등록 신청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과 대리인을 포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8조).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라 함)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인도 이전에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 ※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
>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말소등록 및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가능)
>
>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신청시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아래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공통서류	추가서류

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③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④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⑥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증 ⑨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내압용기장착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9서식) ⑩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⑪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⑫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 적합성 승인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때에는 5만원에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시간을 경과한 것이 105일 이상인 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아래의 등록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본문 및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등록사유	등록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5호)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도난당하거나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자동차 회수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이면 5만원의 과태료를,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이면 5만원에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를,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기한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단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

신규등록 거부사유

신규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 신규등록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등록이 거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고 할 경우
- 미완성자동차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관리의무

자동차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1.2.2. 신규검사를 받아야 해요.

신규검사의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기 위해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 신규검사는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0항, 제43조제1항제1호).

▪ 다음의 사유로 자기인증의무가 면제된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다음의 특례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거나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기인증의 표시"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이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 등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함)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데, 이렇게 확인을 거친 자동차에 적용되는 표시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

신규등록 기간

▪ 다음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0조).

· 다음의 경우는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5호)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신규검사의 절차

신규검사의 신청

▪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에 자동차 제원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출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등)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

적합판정

▪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3항제1호).

▪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

부적합판정

▪ 부적합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본문).

▹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호나목)

▹ 창유리의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0호)

▹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

▹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단서).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① **신규검사 신청시 제출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신규검사신청서

√ 자동차 제원표(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자동차출처 증명서류

√ 자동차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③ **재검사 신청시 제출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 자동차

※ 참고: 교부받은 신규검사증명서는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5호).

1.2.3.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를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이전등록 대상 및 방법

이전등록 신청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신청자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됨)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5.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0조).

이전등록 신청절차

▪ 이전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



※ **이전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①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1.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용도란을 말함)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원본을 제출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②-1 증여인 경우: 증여증서

③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와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

⑤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해당)

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호).

▪ 자동차의 양수인이나 양도인(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이 신청한 이전등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제9조제1호·제3호).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 이전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의2, 제80조제1호·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사유	처벌 내용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범칙금 10만원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범칙금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범칙금 50만원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매매업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상속받을 경우

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나.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등록관청의 이전등록 안내

가.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려는 경우

가. 상속인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1.2.4.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자동차 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 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부여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본문).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단서).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 본문).

▹ 다만,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 단서).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시·도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

▹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절차

▪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정받은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나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를 산 사람을 대신해서 신규·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 ·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해당 외부장치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

√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방법

▪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

▹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될 것(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그 밖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부착 방법

▪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단서).

※ “피견인자동차” 란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관리



▪ 위 예시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훼손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84조제3항제1호·제2호, 제4항제2호·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사유	적용 법조문	처벌 내용
1.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떼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뗀 경우(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과태료 50만원
5.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과태료 10만원
6.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세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領置)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1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

2. 자동차 유지하기

2.1. 변경사항의 신고

2.1.1.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변경등록 신청하기

변경등록의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소유권변동에 따른 이전등록 및 폐차 등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 변경등록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이런 경우엔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 자동차 소유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3항 전단)한 경우
  -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하거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주민등록법」 제7조의4)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명칭)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종류
-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2항).

※ 자동차등록번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시·도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
-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조직폭력·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절차



변경등록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전단)

신청기간	변경등록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제출서류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 증명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서 등록신청 해야 하는 경우**(「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말소등록 및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가능)

※ **변경등록이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거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3호 및 제4호).

자동차사용본거지의 시·도 간의 변경등록

변경등록의 신청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본문).

▹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2006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19773호) 부칙 제2항].

▪ 시·도 간 이동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변경등록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전단)

신청기간	사용본거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과태료

▪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2.1.2. 자동차를 개조했어요.

자동차의 튜닝(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자동차 튜닝"이란?

▪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되,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범퍼의 외관이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시스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단서).

자동차 튜닝의 승인신청

▪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튜닝 승인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다음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함)·중간냉각기
  -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함)의 적재함 덮개
  - √ 소음방지장치 및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구조·장치 중 위의 장치 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함)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 자동차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 등록번호
-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 튜닝작업 완료일자
- 튜닝작업 내용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튜닝 작업 확인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3호).

위반 시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 대상

▪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해 승인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위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하 “국제적 행사 홍보 자동차”라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일시적튜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

▪ 일시적튜닝의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2항).

- 튜닝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 튜닝 후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및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총중량이 제작허용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4군데 이상을 차체 또는 차대나 물품적재장치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적인 행사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과 별도의 승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신청

▪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1항).

-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시적튜닝 사유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 일시적튜닝의 내용이 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튜닝작업 기간, 사용 기간 및 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에 유효기간을 부여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4항·제5항).

▪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6항).

▪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는 위의 유효기간 내에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10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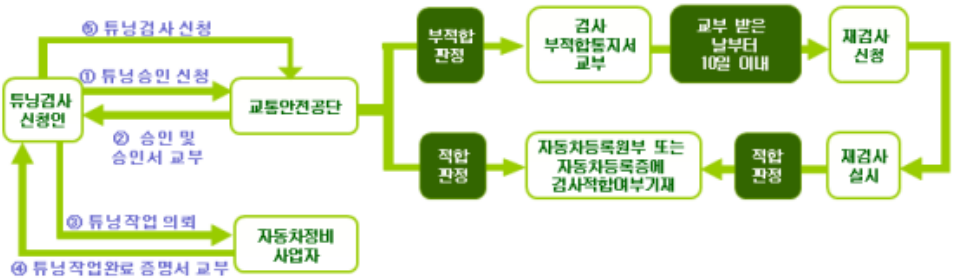
위반 시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튜닝검사

튜닝검사의 절차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및 제78조).

적합판정

▪ 튜닝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가 기재되고 튜닝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가 발급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3호).

부적합판정

▪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재검사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본문).

-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호나목)
- 창유리의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0호)
-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
-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단서).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튜닝검사 신청시기 및 제출사항

▪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 자동차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처벌

- 자동차를 튜닝한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4호).

2.1.3.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임시검사의 대상

"임시검사"란?

-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아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상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참고).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참고)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참고).

임시검사의 절차



임시검사 신청

▪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전단 및 별지 제47호서식).

▹ 이 경우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후단, 제6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47호서식)

적합판정

▪ 임시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가 기재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4호).

>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 기준 및 방법**
>
> - 다음의 기준 및 방법으로 임시검사를 합니다.
>
> · 임시검사 명령에 따른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항목 중 정비명령 사항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검사 실시
>
> ·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동일(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도로-자동차검사-임시검사-검사기준 및 방법 >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본문).

▹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호나목)
- 창유리의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0호)
-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
-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단서).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차령연장을 신청하려면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사업용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조등은 튜닝 승인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전조등과 관련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조등 튜닝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전 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없을 것

√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등화장치의 광학적 설계 특성(반사경, 렌즈 등)을 무시하고, 단순 고광량의 전구만 별도 사용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제한

√ HIR 전구 등 고휘도 변형전구, 자동차용이 아닌 산업용LED 등은 튜닝승인 제한

√ 2000루멘 이하의 방전식전구(HID) 튜닝 시 수동광축조절장치 가능(기존 할로겐 램프 타입 전조등을 개조해 전구만 HID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가)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의 변경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우 승인 불필요

· 전조등의 튜닝은 가능하지만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튜닝의 승인이 제한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검사 서비스-자동차검사-2024년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p.195 참조>

※ 자동차사용자의 자가(自家) 정비작업 범위

Q. 최근 자동차사용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꾸미고 정비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의 튜닝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단서).

· 자동차사용자가 정비할 수 있는 작업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용자의 자가(自家)정비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장치의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의 점검·정비

√ 주행장치의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

√ 전조등(전구교환은 제외함),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안전벨트

√ 차체의 판금·도장 및 용접

2.2. 자동차 검사받기

2.2.1.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정기검사의 주기

▪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검사유효기간´)마다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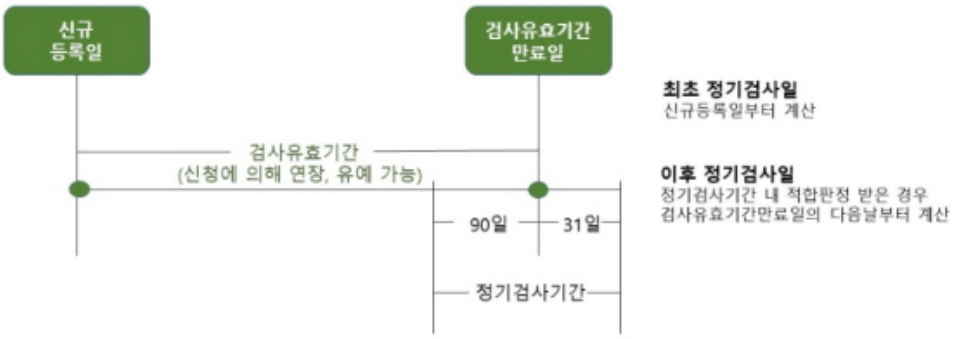
검사유효기간의 기산(起算)

▪ 검사유효기간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 다만, 정기검사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진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재검사를 신청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 정기검사기간 지난 후 적합판정 받은 경우: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정기검사의 절차



정기검사 신청

▪ 정기검사는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정기검사 실시

▪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되고,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발급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2호).

▪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 검사

√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검사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소음 검사

√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검사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제19호)

·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9개 항목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도로-자동차검사-정기검사-검사기준 및 방법 참고>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 재검사 신청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본문).

-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호나목)
- 창유리의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0호)
-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
-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단서).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아래표의 사유 중 ①·⑧에 해당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2항).

▪ 아래표의 사유 중 ③·④·⑤·⑥에 해당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정기검사는 연장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⑦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⑧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유예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소목)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2.2.2.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종합검사"란?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도입

▪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 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함)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세요.

※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 상세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의 <자동차·도로-자동차검사-종합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후단).

※ 자동차종합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할인 받으세요.

· 자동차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검사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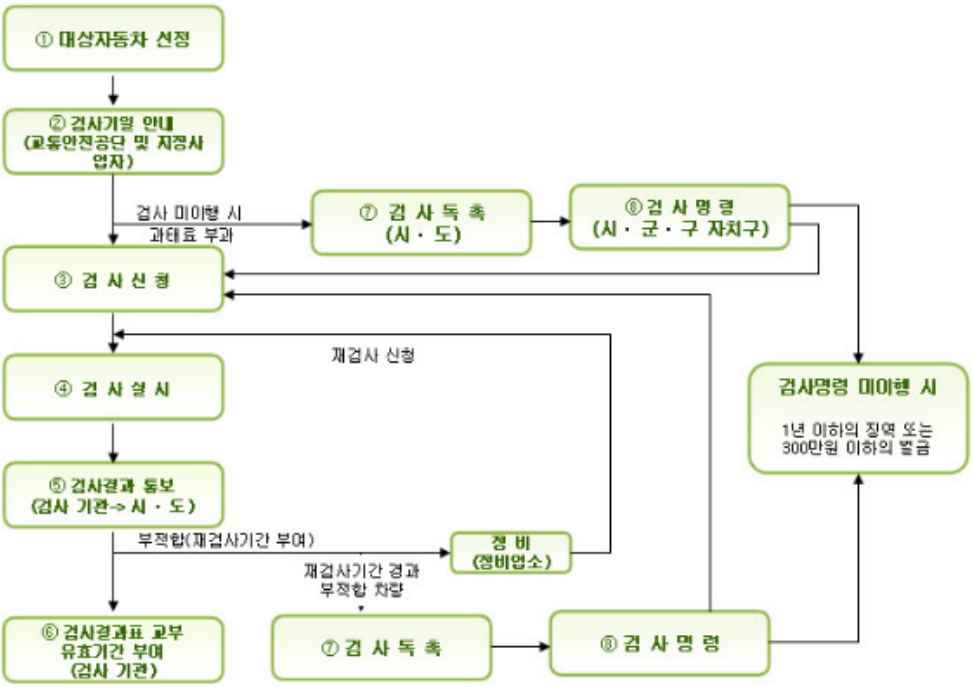
▪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라 함)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함)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절차



자동차종합검사의 신청 및 실시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함)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해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단서).

▪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후단).

재검사

▪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단서).

▪ 재검사기간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6항).

▪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7항).

▪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8항).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검사 유예사유

▪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③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⑧ 부품 수급 등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다만, ① 사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고 일정기간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시 제출 서류

▪ 위의 ② 부터 ⑧ 까지의 사유로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자동차등록증: ②, ③, ④, ⑤, ⑥, ⑧의 사유만 해당(「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
  -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 행정처분서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⑦의 사유만 해당(「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 ⑧의 사유만 해당(「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영치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과태료

▪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소목).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형사처벌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2.3. 고장난 자동차 정비받기

2.3.1. 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정비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의 등록

▪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정비작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및 별표 26).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정비작업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금지 행위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4호).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않은 부품을 말함), 중고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4항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 다음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 ·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 돼야 함)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 돼야 함)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 ·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을 것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자동차정비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1).

자동차의 조건	무상 수리 보증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2)].

▪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3)].

수리기간

▪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4)].

※ 이때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비고).

3. 자동차 처분하기

3.1.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3.1.1.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 확인하기

- 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4항).
  -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를 위반하여 위의 종사원을 둔 자동차매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3호의2).

자동차매매업자의 수수료 등

-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 자동차매매업자는 위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매도인에게 부과된 경우

Q.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은 차량의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사례>

개인 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이전등록을 위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로써 자동차매매업자용과 직접거래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사자간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참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

▪ 자동차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참조).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이전등록을 위한 증여증서 작성

▪ 자동차를 증여할 경우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 ※ 이전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3.2.1. 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의 폐차

▪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 내압용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 에어백 모듈

폐차 시 확인사항

▪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폐차 절차

▪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요청

▹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함)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함)

▪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자동차 말소등록 하기

▹ 폐차를 위해 자동차를 인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 말소등록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조기폐차 제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

3.2.2. 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효력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9항).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본문).

▪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단서).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필요적 말소등록의 사유(「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2.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임의적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

1. 압류등록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①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②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③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2. 자동차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①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②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③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사실을 확인한 경우

④ 다음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⑤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⑥ 위 ①부터 ⑤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함) 중 1인 또는 수인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제1항제1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7항)

①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말소등록의 신청

▪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2024년 6월 18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4582호) 부칙 제4조].

▪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음)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전단).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함)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함)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6.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만 해당)
7.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함)
8.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함)
9.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0.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1.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단서).

수출에 의한 말소등록 이후의 절차

▪ 수출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말소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자동차의 수출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제1항).

※ 2024년 6월 18일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수출여부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부칙 제2조).

▪ 말소등록 후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후단).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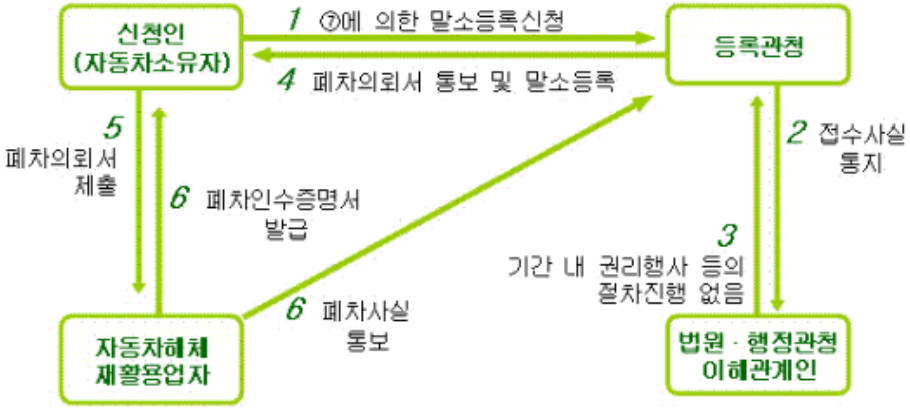
▪ 말소등록의 통지

▹ 압류등록된 자동차가 환가가치가 없어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신청 접수사실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등록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 만약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보내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

▹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항).

▹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직권에 의한 말소

직권에 의한 말소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③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강제처리(「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해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⑥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벌금 및 과태료

▪ 말소등록과 관련된 벌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4항제5호·제6호 , 제5항제2호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사유	처벌 내용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	-①,②,③,④,⑤의 경우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⑥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수출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기한 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목)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3.3.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3.3.1.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 사실확인원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
> ·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 대포차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
> ·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 · 대포차를 운행했을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의2).
>
> · 또한, 대포차를 구매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2호).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고).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7조)

▹ 보험금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도난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 ※ 말소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도난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신규등록 신청

▪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호).

▪ 도난당한 차를 다시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0조).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 ※ 신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